

『멕시코,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 개정안』

2026. 5. 7.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멕시코	전년도 수출액 (천불)	12,055,884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일회용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의 상업화·유통 규제 권한 신설 및 폐기물 관리 강화 기반 마련
- (적용범위) HS 코드 - 전 제품*
 - * 플라스틱 제품 전반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제품
 - 비닐봉지, 식품용기, 컵, 식기류, 빨대, 포장재, 발포 폴리스티렌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및 분해가 느린 재질 제품 등 포함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플라스틱 규제 적용 범위 확장과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규정
 - 플라스틱 관련 핵심 용어 정의 신설
 - 플라스틱 및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를 특수관리 폐기물 범주에 포함
 - 연방 및 지방정부에 플라스틱 제품의 상업화·유통에 대한 금지·규제·통제 권한 부여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미국) 연방 통합 규제 없이 주별 금지 및 생산자책임 중심 관리
 - (중국)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 규제 병행
 - (일본) 자원순환 중심의 전주기 관리 및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 운영
 - (EU)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시장 출시 금지 및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시장행위 및 폐기물 관리 중심의 법적 규제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 시장 규제로 확대 가능
- (권고사항) 제품 및 포장재 내 플라스틱 사용 여부 점검 및 하위 규정·공식표준 제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규제 불확실성) 금지 대상 품목 및 적용 기준이 하위 규정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단기적 불확실성 존재
- (소재 전환 부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경우 대체 소재 적용 및 제품 재설계 필요성 증가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규제 대상 여부 중심 대응 및 현지 수입자와 협력
 - (중견기업) 제품 구조 점검 및 친환경 소재 전환 전략 수립
 - (대기업)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규제 대응체계 구축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3
III.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6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6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8
I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9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9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0
V. 대응 방안	11
참고 1 참고자료	12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3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Waste, General Law, October 2003 - Proposed Amendment - (on single-use plastics) Draft Decree, March 2026		
	국문	폐기물 예방 및 관리, 일반법, 2003년 10월 - 개정안 제안 -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법령 초안, 2026년 3월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멕시코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		통보일 (고시일)	2026.03.10.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709,033,00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12,055,884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 ▪ Mexic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관련 정의 신설, 폐기물 분류 확대, 관리계획 의무 강화 및 상업화·유통 규제 권한 부여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단계로, 향후 하위 규정 및 공식 표준 제정 이후 실질적 시장 규제로 구체화될 가능성 존재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범위 및 적용 기준 미확정에 따른 불확실성 및 소재 전환 부담 가능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포장재 구성 점검, 하위 규정 모니터링, 현지 파트너와의 대응체계 사전 구축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멕시코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및 미세플라스틱 확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응을 위해 관련 법·정책 체계 정비 추진
- 기존의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¹⁾(이하 ‘폐기물법’)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관련 규제 보완 필요성에 따라 개정 추진

□ 규제 요지

- 기존 폐기물법에 플라스틱 규제 체계를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법적 정의 도입
- 플라스틱 및 분해가 느린 물질을 특수관리 폐기물로 분류
- 플라스틱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규제·통제 근거 마련

□ 적용대상

- (HS 코드: 전 제품) 플라스틱 제품 전반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제품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비닐봉지, 용기, 컵, 식기류, 빨대, 포장재 등)
-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및 분해가 느린 재질 제품 등 포함

□ 시행일

- 법안 채택 및 공포 시, 연방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시행
- 관보 게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규범 정비 및 생분해성·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공식표준(NOM) 마련
- 관보 게재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규제·통제 절차 개시

1) Ley General para la Prevención y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2

규제 세부 내용

□ 「폐기물법」 개정사항 (신설 및 확장)

구성	주요 내용
제5조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주요 용어 및 정의 내용 신설 ·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등 -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 적용 범위의 법적 특정 근거 마련 ·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5mm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으로서, 다양한 기원에서 발생하여 환경에 축적되고 오염원이 되는 것 · (플라스틱) 유기물, 석유 또는 천연가스에서 유래한 중합체로 구성된 합성 또는 반합성 재료로서,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물질* *플라스틱 예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 폴리에틸렌(PEBD), 고밀도 폴리에틸렌(PEAD), 폴리스티렌(PS), 발포 폴리스티렌(PSE),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카보네이트 등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소비되어 산화 과정을 거쳐 물, 이산화탄소 또는 바이오매스로 전환될 수 있는 플라스틱 · (일회용 플라스틱)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한 번 사용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재사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
제7조 연방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및 정책 추진 권한 확대 -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권한 부여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보장 메커니즘 설계 및 시행 - 플라스틱 전주기 환경 영향 저감 조치 추진 근거 마련 · 제조, 가공, 추출, 유통 및 사용 전 과정 포함 · 재활용 및 재사용 원료 사용까지 포함 - 플라스틱 제품 규제 권한 명시 ·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구체화 · 접시, 컵, 컵 뚜껑, 식품 운반용 트레이, 숟가락, 칼, 포크, 젓는 막대, 빨대, 면봉용 막대, 풍선 막대, 탐폰 삽입기, 플라스틱 커피 캡슐 등 - 대체재 전환 정책 방향 설정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촉진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대체 유도 - 환경오염 저감 관련 교육 및 기술개발 기능 강화 · 플라스틱 오염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연구, 보급, 기술개발 포함

구성	주요 내용
제9조 연방 구성 주체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 권한 명시 - 지역 내 제품 규제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환 촉진 권한 부여 - 환경오염 저감 정책 기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추진,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 연방 차원의 규제 방향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규제 조치 설정 가능
제19조 특수관리 폐기물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리 폐기물 범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및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를 신규 포함 - 적용 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류는 본 법 및 관련 멕시코 공식표준에서 위험폐기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 제도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페타이어 중심의 특수관리 폐기물 체계에 명시적으로 플라스틱 포함 · 플라스틱 폐기물을 별도의 관리 대상 폐기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책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관리 대상 폐기물로 다루어지는 구조 형성 · 향후 수거, 처리, 재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 관리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
제28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 대상 폐기물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리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에 더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를 명시적으로 추가 - 기존 규정 적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문 구조는 유지하면서 관리 대상 폐기물 범위를 확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범위가 일회용 제품 전반으로 확대 -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 시 도시 고형 폐기물 또는 특수관리 폐기물이 되는 제품과 관련된 대량 발생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 - 적용 기준 및 준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은 멕시코 공식표준 NOM-161-SEMARNAT-2011에 명시된 기준과 연계 · 해당 표준에 따른 분류, 회수, 처리 및 관리 절차 준수 필요

구성	주요 내용
경과조항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법령은 연방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됨 - 현재의 본 법안은 향후 입법 절차 완료 및 관보 게재 시점에 따라 시행일 결정 예정
경과조항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구성 주체는 본 법령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365일 이내에 해당 지방 법령 정비 및 상호 정합성 확보 필요
경과조항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천연자원부 이행 의무 · 법령 공표 후 180일 이내에 고형 폐기물 관련 규범의 정비 및 제도 간 정합성 확보 ·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메커니즘 설계
경과조항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천연자원부 이행 의무 · 법령 공표 후 180일 이내에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관련 멕시코 공식표준을 제정해야 함
경과조항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천연자원부 이행 의무 · 법령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365일 이내에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규제·통제 절차를 개시해야 함
경과조항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천연자원부 이행 의무 · 법령 공표 이후 환경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시행 촉진 ·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추진 ·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감소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3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연방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법은 부재하나, 「자원보전회수법」²⁾ 및 「유해물질규제법」³⁾ 등을 기반으로 관리
 - 플라스틱 규제는 주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활용 가능성 표시, 포장재 감량, 생산자책임 제도 등이 병행 적용
- (도입동향) 연방 차원에서 플라스틱 직접 금지보다는 폐기물 관리, 재활용 확대 및 해양 플라스틱 저감 전략 중심 정책 등 추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주 정부 단위로 포장재 감량, 재활용 가능성 표시 제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또는 제한 확대 추세

2 중국

- (현행 규정)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⁴⁾ 등에 따라 비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 두께 기준 미달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일부 포장재 등에 대해 생산 및 유통 금지
 - 주요 도시 중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 단계적 확대
- (도입동향)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 감축, 재활용 확대 및 대체 소재 전환 정책 지속 추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전자상거래 및 택배 포장재 감량 정책, 재활용 체계 구축 및 생분해성 소재 사용 촉진 정책 병행

2)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3)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4)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3

일본

- (현행 규정)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설계, 제공, 회수 및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공 사업자에 대해 사용량 감축 및 대응 조치 수립 의무 부과
- (도입동향)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자원 순환 고려,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강화 중심 정책 추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사업자 대상 자율적 감량 계획 제출, 재활용 촉진 및 회수 시스템 구축 제도 운영

4

EU

- (현행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⁶⁾ 및 REACH 규정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진
 - 면봉 막대, 식기류, 빨대, 교반봉 등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 금지
 -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REACH 규정에 따른 사용 제한 적용
- (도입동향)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⁷⁾을 통해 재활용성, 재사용성, 재생원료 함량 및 라벨링 요건 강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설계 기준, 재활용 가능성 기준 및 환경정보 표시 의무 통합 체계 운영

5)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6) Directive (EU) 2019/904

7) Regulation (EU) 2025/40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미국	중국	일본	EU	멕시코
상위 법·프레임	자원보전회수법 및 유해물질규제법과 주별 규제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및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정책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REACH 규정,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폐기물법
주요 규제부처	환경보호청(EPA), 주정부	생태환경부(MEE),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성, 경제산업성	유럽집행위원회, 유럽화학물질청, 회원국 당국	환경 및 천연자원부
규제 접근 방식	주별 금지 및 표시 규제 중심	국가 주도 단계적 금지 및 감축	자원순환 중심 관리	시장출시 제한과 화학물질 규제 결합	법적 정의 및 권한 부여 중심
일회용 플라스틱	주별 금지 및 제한	전국적 단계적 금지	감축 의무 중심	특정 품목 시장 출시 금지	금지·규제·통제 권한 신설
미세 플라스틱	직접 규제는 제한적	일부 제품 사용 제한	간접 관리 중심	의도적 첨가 제한	정의 신설 및 규제 대상 포함
포장재 규제	주별 EPR 및 표시 규제	포장재 감량 및 제한	감량 및 재활용	포장재 통합 규제	관리계획 대상 포함
생산자 책임	주별 확대	정책적으로 강화	회수·재활용 책임	강제적 EPR 체계	관리계획 의무 확대
사후관리	주정부 중심 단속	시장감독 강화	행정지도 중심	EU 공동 시장감시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 예정
최근 규제 방향	재활용 및 표시 규제 강화	사용 제한 및 대체재 확대	자원순환 정책 고도화	포장재 및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	규제 체계 도입 단계
기업 리스크	주별 규제 상이	생산·유통 제한	감축 의무 대응	설계·라벨·재활용 요건 대응	하위규정 불확실성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폐기물 예방 및 관리, 일반법, 2003년 10월 - 개정안 제안 -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법령 초안, 2026년 3월
관리기관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 (Mexic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법적근거	「폐기물법」
통보문서	-
주요목적	일회용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의 상업화·유통 규제 근거 마련, 플라스틱 오염 저감, 폐기물 관리책임 강화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규제 권한	플라스틱 제품 상업화·유통에 대한 금지·규제·통제 권한 부여
폐기물 분류	플라스틱 및 난분해성 재료를 특수관리 폐기물에 포함
관리계획	일회용 플라스틱 등 관리계획 대상 확대
후속 기준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공식표준 제정 예정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순환 정책 목적상 타당
비차별성	자국·수입 제품 동일 적용 구조
최소무역제한성	직접 제한은 없으나 향후 규제 절차에 따른 부담 가능
투명성	하위 규정은 미확정이며, 구체적 이행사항은 향후 결정 예정

○ 결론 및 권고사항

- (결론) 플라스틱 제품의 상업화·유통에 대한 금지·규제·통제 권한과 폐기물 관리책임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 규제에 해당
 - 적합성평가나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체계 내에서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성격
- (권고사항) 향후 규제 대상 여부 판별 및 관리책임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자사 제품 및 포장재가 일회용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 발포 폴리스티렌 등 규제 대상 해당 여부 선제 검토
 -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의무 적용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관리체계 및 데이터 관리 구조 사전 정비
 - 환경 및 천연자원부의 공식표준 제정 및 연방 구성 주체의 지방 법령 정비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폐기물 관리 및 환경정책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해당

- 상품무역에 대한 직접적 기술장벽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국·외국 제품 간 차별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규제 대상 여부 확인 및 비용 부담 최소화	① 자사 제품 및 포장재 내 일회용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첨가 제품, 발포 폴리스티렌 사용 여부 확인 ② 현지 수입자와 관리계획 수립 주체 및 비용 분담 구조 협의 ③ 단기적으로 대체 포장재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부터 우선 검토
중견 기업	제품군별 관리체계 구축 및 대체 소재 검토	① 제품군별로 규제 대상 가능성을 분류하고 관리계획 필요 여부 검토 ② 재활용 가능 소재, 생분해성 소재, 재사용 포장재 적용 가능성 검토 ③ 후속 NOM 및 지방 법령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대기업	글로벌 자원순환 전략과 연계한 선제 대응	① 멕시코 규제 대응을 EU, 미국 주별 포장재 규제 등 글로벌 탈플라스틱 규제 대응 체계와 연계 ② 협력사 및 포장재 공급망을 포함한 플라스틱 사용 현황 관리 ③ 현지 법인·수입자·협회 등을 통한 하위 규정 및 공식표준 제정 동향 파악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참고자료**□ **참고자료**

연번	국문명	원문명
1	폐기물법	Ley General para la Prevención y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2	멕시코 공식표준 NOM-161-SEMARNAT-2011, 특수관리 폐기물 분류 및 관리계획 기준	Norma Oficial Mexicana NOM-161-SEMARNAT-2011, Que establece los criterios para clasificar a los residuos de manejo especial y determinar cuáles están sujetos a plan de manejo
3	생태평형 및 환경보호 일반법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4	멕시코 품질인프라법	Ley de Infraestructura de la Calidad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의 다양한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령안 제안

모레나(MORENA) 정당 소속 마리아 과달루페 모랄레스 루비오 하원의원 발의

서명자 본인, 모레나 의회 그룹 소속 하원의원 마리아 과달루페 모랄레스 루비오는, 멕시코 합중국 정치헌법 제71조 제2항 및 제72조, 그리고 하원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7조 및 제78조에 근거하여, 본 의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에 따른 플라스틱 규제 관련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의 다양한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령안 제안을 제출한다.

본 제안의 목적은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하여,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추출, 유통 및 사용이 환경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는 교육, 훈련, 홍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공공정책 차원의 조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의제에서 필수적이며 횡단적인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협약 및 의정서 등을 통해 해당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상호 연결된 위기와 싸우고 있다. 이 위기는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의 변화,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주요 종 및 생태계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지구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축적을 포함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위기는 서로 연관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복합적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 및 멕시코에서 현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된 조치들의 선례로서,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환경의 합리적 관리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참가국들은 인간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26개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경제 성장과 해양, 대기, 수자원 등의 오염 간 상호 연관성을 인정한 데 기초한다.

하원 사회연구 및 여론센터(CESOP)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기점으로 생태계 보호,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후변화 대응, 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산림 황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환경 대응의 기초와 방향을 형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멕시코 환경법센터(CEMDA)에 따르면,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멕시코를 포함한 179개국 대표들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문서를 채택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방향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199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 내에서 당사국총회(COP)가 출범하여, 인간 활동이 기후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약속이 설정되었다.

2001년에는 스톡홀름 협약이 체결되어, 인간 건강과 환경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생산 및 폐기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적응, 회복력 강화, 교육·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멕시코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복지 기반 발전,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할 높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그 예로 2025년 COP30에서 기후변화 완화, 생태계 복원, 회복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순배출량을 364백만 톤에서 404백만 톤 CO₂e 범위로 유지하고, 현재 수준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성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블루 카본 전략”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 탄소 흡수 및 저장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완적으로,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의 자료에 따르면, 고품 폐기물의 통합 관리 및 적절한 처리가 미흡한 문제는 국가 및 지방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추출-생산-소비-폐기” 중심 경제 구조는 과도한 폐기물 발생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높은 재정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무기성 폐기물의 88%가 불법 매립지 또는 노천 폐기장에 방치되어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중금속 및 독성 물질을 수질과 토양으로 확산시킨다.

이러한 오염 위기의 중요한 부분은 플라스틱 오염이다. 최근 수십 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면서, 극도로 느린 분해 속도로 인해 환경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물, 공기, 토양, 식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 헌법 제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한다. 환경 피해와 훼손은 법에 따라 책임을 발생시킨다.”

또한 헌법 제115조 제3항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폐기물의 청소, 수거, 운반, 처리 및 최종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과도조항은 국가가 에너지 효율성,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원 효율성, 폐기물 및 배출 저감, 탄소 발자국 감소 등의 기준과 모범사례를 적용하여 환경 보호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는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 외에도 「기후변화 일반법」 및 「순환경제 일반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화 및 통합 관리, 오염

예방,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제품 수명 연장을 통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입법자로서 우리는 단지 권한과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규범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도모해야 할 의무와 본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개발계획(PND 2025-2030)을 구성하는 네 가지 일반 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와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복지와 인간 중심의 발전

도덕적 경제와 노동

지속가능한 발전

이 중 네 번째 축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멕시코 국가 발전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해당 축에서 제시된 목표들은 주권을 갖춘 국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이용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합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시민과 기업이 존재하는 국가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개발계획(PND 2025-2030)은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환경 및 천연자원 부문 프로그램(PROMARNAT 2025-2030)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방 관보(DOF)에 공표된 바에 따르면, PROMARNAT는 5개의 목표, 7개의 전략 및 각각의 실행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멕시코 국민의 복지 증진과 함께 자연의 보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물의 합리적 사용,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 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생태 균형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 4와 목표 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목표 4. 기후 행동을 강화하여 적응 가능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며, 오염의 예방 및 통제를 통합함으로써 인구의 건강, 생태계, 생산 시스템 및 전략적 인프라를 기후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전략 4.1. 인권, 평등 및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연방 공공행정, 기타 정부 수준 및 사회 부문의 참여를 통해 배출 저감 정책과 탄소 흡수원 보전 및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전략 4.2. 자연 기반 해결책을 통해 장기적 관점과 인권, 환경 정의 및 평등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인구, 생태계, 생산 활동, 수자원 및 전략적 인프라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전략 4.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의 실행을 위해 기관 역량과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정부 수준 및 생산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략 4.4.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정책을 장려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며, 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 및 생산 부문과 정부 수준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략 4.5. 공기 및 토양 오염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하여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 이는 연방 공공행정 및 기타 정부 수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목표 5.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포용적이며 환경 정의 접근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생태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결정에 필요한 환경 정보와 환경 문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역 기반

접근을 강화한다.

전략 5.1.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회복적이고 참여적인 환경 정의 시스템을 강화하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전략 5.2. 인권, 평등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환경 공공정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촉진한다.

전략 5.3.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현대적이고 투명한 환경 관리로 전환하여 부패 수준을 감소시킨다.

전략 5.4. 환경 분야에서의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전통 지식의 활용을 촉진하여 정책 설계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정보를 생성한다.

전략 5.5. 시민과 공공정책 결정에 유용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환경 정보 접근을 보장한다.

전략 5.6. 환경 교육, 훈련,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촉진하여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사회를 형성한다. 이는 다른 정부 수준 및 사회 부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더하여, 멕시코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특정 관리 폐기물에 대한 「특수관리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국가 프로그램 2022-2024」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우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내 특수관리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여 정부 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한다.

특수관리 폐기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을 촉진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도시 고형 폐기물(RSU)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제품의 폐기, 포장재 또는 용기에서 발생하며, 상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고형 폐기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체 상태의 물질로,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폐기된 이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오염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반드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환경 및 천연자원부(SEMARNAT)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멕시코에서는 하루 약 120,128톤의 도시 고형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발생량은 약 0.944kg이다. 구성 비율은 유기성 폐기물 51%, 플라스틱 14%, 기저귀 8%이다.

또한 일일 발생량이 높은 주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주 16,739톤, 멕시코시티 9,552톤, 할리스코주 7,961톤, 베라크루스주 7,813톤.

플라스틱의 경우, 하루 약 15,60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1인당 발생량이 55% 감소하였고, PET 수거율 64%를 기반으로 2025년 기준 재활용률은 22%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및 입법 활동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의 적절한 관리와 통합적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과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재활용 및 처리의 효과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플라스틱 생산량은 거의 모든 다른 물질을 초과하였으며, 생산된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단일 사용 후 폐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약 90억 톤의 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재활용의 보편적 상징인 뱀비우스 삼각형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플라스틱 유형 7가지가 존재하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재활용 가능하다. 물병, 디스펜서 용기, 쿠키 트레이 등에 사용된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이며, 내구성이 높고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고온에도 견딘다. 따라서 우유병, 세정제 용기 등에 사용된다.

”

폴리염화비닐(PVC): 가볍고, 저항성이 있으며, 내구성이 있고, 화재에 대한 내성이 높지만, 이 재료에 대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해당 참조센터는 “제조 공정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플라스틱으로 간주된다”고 인정한다. 또한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 건설, 배관, 의료 제품 및 신발에 많이 사용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부드럽고, 유연하며, 반투명하다. Aquae에 따르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재활용된 이후에는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비닐봉지, 식품 트레이 또는 식품용 랩 필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폴리프로필렌(PP): 열에 강하고 다용도이다. 유엔 기구는 이것이 포함된 일상용품으로 감자칩 봉지, 전자레인지용 접시와 같은 주방용품, 병뚜껑 및 일회용 안면 마스크를 언급한다.

폴리스티렌(PS): 단열성이 있고 저항성이 있으나, 그 재활용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Aquae는 인정한다. UNEP는 이를 일회용 식기, 접시 또는 컵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곱 번째 범주는 “그 구성 성분이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아 재활용될 수 없고, 그로 인해 매우 오염을 유발하는 유형이 되는” 기타 유형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재단은 설명한다.

또한 혼합 조성의 일부 플라스틱 유형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범주에는

콤팩트디스크(CD)와 치약 용기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발포 폴리스티렌(EPS)은 98퍼센트의 공기와 2퍼센트의 원재료로 구성된 발포 플라스틱 재료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재료이지만, 여러 산업이 수행하는 작업에 그 적용성이 맞춰질 정도로 매우 다용도인 재료이다. Knauf Industries España에 따르면, “...폴리스티렌 폼의 팽창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더 가볍고 경제적이다. 주로 건설에서 지붕과 벽의 단열, 깨지기 쉬운 제품의 포장 또는 등은 용기 등에 사용되며, 그 밖에도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스티렌은 많은 채소에 존재하지만, 폴리스티렌 폼을 제조하기 위해 이 단량체는 벤젠과 에틸렌의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탄화수소인 에틸벤젠에서 얻어진다. 즉, 석유 파생물이다”라고 한다.

추가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있다. UNEP에 따르면, 이는 폐기되거나 재활용되기 전에 단 한 번 사용되도록 의도된 물품일 뿐이며, 그 안에는 슈퍼마켓 봉투, 식품 용기, 병, 빨대, 용기, 컵 및 식기류와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흔히 “폐기용품”이라고도 불린다.

금속과 같은 다른 재료와 달리, 플라스틱은 산화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 생분해되는 대신 광분해된다. 즉, 작은 조각들로 천천히 분해되며, 여기서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UNAM은 미세플라스틱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오염물질 중 하나이며,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수계 및 먹이사슬에서 발견되어 이러한 방식으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체내에 들어가면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장벽을 통과하여 순환 혈류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인 대식세포와 접촉한다”고 의학부 해부학과의 그레고리오 라파엘 베니테스 페랄타 교수가 언급한다. 이 때문에 이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증가하는 위험으로 간주된다.

2025년 10월, 소각 대안을 위한 글로벌 연합(GAIA)과 Break Free From Plastic(BFFP)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34개국 중 23개국, 즉 68퍼센트가 이 주제를 규제하는 특정 국가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첫 번째로 칠레가 있으며, 그곳에는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폴리스티렌에 관한 가장 완전하고 엄격한 법률 중 하나가 존재하고, 이는 2024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2년에 14가지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였고, 2030년까지 100퍼센트 재활용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루는 201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규제하고 있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제출한 다른 국가로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나마 및 미국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봉투와 폴리스티렌 금지가 두드러진다.

멕시코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 금지,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제품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촉진,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남용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환경문화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규제와 개혁을 선도한 연방 구성 주체 중 하나가 멕시코시티였다. 이는 2019년 6월 25일 멕시코시티 고형폐기물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개정은 멕시코시티 관보에 공표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본 법령안 제안은 앞서 설명한 사항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이 적절하게 업데이트되고 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관한 국제적 요구사항과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부실한 폐기물 관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환경 내 플라스틱,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일반법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모든 연방 구성 주체가 자국의 지방 법률을 관리 관행 개선 접근방식, 소비자와 생산자의 습관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료의 생산 및 소비에서 지속가능한 모델의 촉진에 맞추어 채택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규정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2030 의제와 함께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멕시코 국가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경로에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이니셔티브는 목표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세부목표 12.5 “지금부터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와 관련된다.

앞서 설명한 바에 따라, 이하에서는 제안된 추가 및 개정 사항을 제시한다.

제22호부터 제46호까지. ...

제22호부터 제46호까지. ...

제7조. 연방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연방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대응 조항 없음

제6호의2.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시행한다.

대응 조항 없음

제6호의2의1.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추출, 유통 및 사용뿐만 아니라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의 사용이 환경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촉진한다.

대응 조항 없음

제6호의2의2.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 규제 및 통제를 감독한다.

대응 조항 없음

제6호의2의3. 접시, 컵, 컵 뚜껑, 식품 운반용 트레이, 숟가락, 칼, 포크, 젓는 막대, 빨대, 면봉용 막대, 풍선 막대, 탐폰 삽입기,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커피 캡슐 등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 규제 및 통제를 감독한다.

대응 조항 없음

제6호의2의4.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하여, 해당 플라스틱이 일회용 플라스틱 및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도록 한다.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

제17호.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환경에 부정적인 습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한다.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

제17호.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환경에 부정적인 습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발포 폴리스티렌(EPS),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카보네이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과 같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는 보급,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

제9조. 연방 구성 주체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연방 구성 주체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대응 조항 없음

제6호의2.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을 금지, 규제 및 통제하고,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한다.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2호.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습관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과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한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2호.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습관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과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협력하는 보급,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한다.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 ...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 ...

제19조. 특수관리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다만, 이 법 및 관련 멕시코 공식표준에서 위험폐기물로 간주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특수관리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다만, 이 법 및 관련 멕시코 공식표준에서 위험폐기물로 간주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제10호. 사용된 타이어, 및

제10호. 사용된 타이어;

대응 조항 없음

제10호의2. 플라스틱 또는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 및

제11호. ...

제11호. ...

제28조.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

제3호. 폐기될 때 도시 고형 폐기물 또는 특수관리 폐기물이 되는 제품의 대량 발생자 및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로서, 해당 멕시코 공식표준에 따라 관리계획 대상 폐기물 목록에 포함되는 자; 발포 폴리스티렌을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그리고 가치화 및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용된 타이어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 및

제28조.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

제3호. 폐기될 때 도시 고형 폐기물 또는 특수관리 폐기물이 되는 제품의 대량 발생자 및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로서, 해당 멕시코 공식표준에 따라 관리계획 대상 폐기물 목록에 포함되는 자; 발포 폴리스티렌을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일회용 플라스틱 또는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 그리고 멕시코 공식표준 NOM-161-SEMARNAT-2011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치화 및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른 사용된 타이어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 및 경과조항

제1조. 본 법령은 연방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발효한다.

제2조. 연방 구성 주체는 본 법령의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365일 이하의 기간 내에 해당 지방 법령을 업데이트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제3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표 후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고형 폐기물에 관한 적용 가능한 규범의 업데이트 및 조화를 수행하고,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제4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표 후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해당 멕시코 공식표준의 작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65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 규제 및 통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제6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포일부터 환경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과도한 소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대안에 관하여 일반 시민의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협력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앞서 설명한 바에 따라, 본인은 이 의회에 다음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제출한다.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 제5조에 제19호의2, 제21호의2, 제21호의2의1 및 제21호의2의2를 추가하고, 제7조에 제6호의2, 제6호의2의1, 제6호의2의2, 제6호의2의3 및 제6호의2의4를 추가하며, 제9조에 제6호의2를 추가하고, 제19조에 제10호의2를 추가하고, 또한 제7조 제17호, 제9조 제12호 및 제28조 제3호를 개정하는 법령.

단일 조항.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 제5조에 제19호의2, 제21호의2, 제21호의2의1 및 제21호의2의2를 추가하고, 제7조에 제6호의2, 제6호의2의1, 제6호의2의2, 제6호의2의3 및 제6호의2의4를 추가하며, 제9조에 제6호의2를 추가하고, 제19조에 제10호의2를 추가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7호, 제9조 제12호 및 제28조 제3호를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 예방 및 종합관리 일반법

제5조. 이 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

제19호의2.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5밀리미터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으로서, 다양한 기원에서 발생하고 환경에 축적되어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 ...

제21호의2. 플라스틱: 유기물, 석유 또는 천연가스에서 유래한 중합체로 구성된 합성 또는 반합성 재료로서,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 폴리에틸렌(PEBD), 고밀도 폴리에틸렌(PEAD), 폴리스티렌(PS), 발포 폴리스티렌(PSE),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카보네이트 등이 있다.

제21호의2의1. 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소비되어 산화 과정과 물, 이산화탄소 또는 바이오매스로의 전환으로 이어짐으로써, 수년 내에 분해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료로 제조된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21호의2의2. 일회용 플라스틱: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사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사용 수명이 일반적으로 짧은 제품을 말한다.

제22호부터 제46호까지. ...

제7조. 연방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6호의2.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시행한다.

제6호의2의1.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추출, 유통 및 사용뿐만 아니라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의 사용이 환경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촉진한다.

제6호의2의2.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 규제 및 통제를 감독한다.

제6호의2의3. 접시, 컵, 컵 뚜껑, 식품 운반용 트레이, 숟가락, 칼, 포크, 젓는 막대, 빨대, 면봉용 막대, 풍선 막대, 탐폰 삽입기,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커피 캡슐 등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 규제 및 통제를 감독한다.

제6호의2의4.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하여, 해당 플라스틱이 일회용 플라스틱 및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도록 한다.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

제17호.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환경에 부정적인 습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 폴리에틸렌(PEBD), 고밀도 폴리에틸렌(PEAD), 폴리스티렌(PS), 발포 폴리스티렌(PSE),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카보네이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과 같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는 보급,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

제9조. 연방 구성 주체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6호의2.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을 금지, 규제 및 통제하고,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한다.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2호.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습관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 및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협력하는 보급,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한다.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 ...

제19조. 특수관리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다만, 이 법 및 해당 멕시코 공식표준에서 위험폐기물로 간주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제10호. 사용된 타이어;

제10호의2. 플라스틱 또는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 및

제11호. ...

제28조.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3호. 폐기될 때 도시 고품 폐기물 또는 특수관리 폐기물이 되는 제품의 대량 발생자 및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로서, 해당 멕시코 공식표준에 따라 관리계획 대상 폐기물 목록에 포함되는 자; 발포 폴리스티렌을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일회용 플라스틱 또는 기타 느리게 분해되는 재료; 그리고 멕시코 공식표준 NOM-161-SEMARNAT-2011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치화 및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른 사용된 타이어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 및

제4호. ...

경과조항

제1조. 본 법령은 연방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발효한다.

제2조. 연방 구성 주체는 본 법령의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365일 이하의 기간 내에 해당 지방 법령을 업데이트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제3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표 후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고형 폐기물에 관한 적용 가능한 규범의 업데이트 및 조화를 수행하고,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제4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표 후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해당 멕시코 공식표준의 작성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365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상업화 및 유통에 대한 금지, 규제 및 통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제6조. 환경 및 천연자원부는 본 법령 공표일부터 환경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과도한 소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대안에 관하여 일반 시민의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감소에 협력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산 라사로 입법궁, 2026년 3월 4일

삼가 제출함

하원의원 마리아 과달루페